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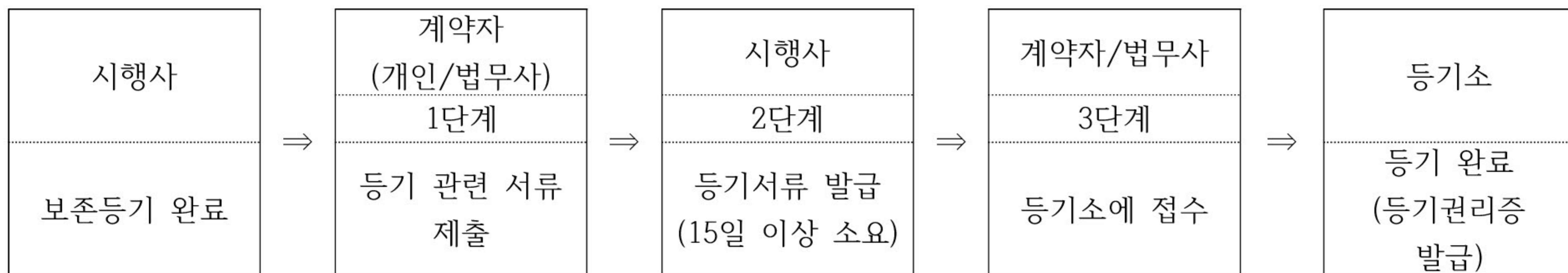
※아래 안내사항에 따른 진행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에 입주(점)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계서 입주하신 한신더휴 리저브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2024년 12월 30일 접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대출세대 근저당권
 설정등기 포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하시어 기간 경과로 인한 재
 산상의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보존등기 접수일(2024. 12. 30.)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 기준 6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최저 5% ~ 최고 30%까지 과태료 부과)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관련 서류 신청 및 발급 일시와 장소는 하단에 기재

1) 개별등기 신청 시 (직접 등기 신청하시는 경우)

1 단계 (개인self 등기시)	계약자 → 한신공영으로 위임장 및 신청서류 발송
<p>[준비서류]</p> <p>① 위임장 1부(첨부 참조)</p> <p>②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기재) 1부</p> <p>③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1부 발급</p> <p>[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발급 (등기열람/발급 →인감정보관리→매도용매수자등록 입력 →확인서발급)]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2010001.jsp 참조)</p> <p>* 단독(개별)/공동명의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매수 신청은 1부로 제한합니다.</p> <p>* 발급시 하단 <매도용인감증명서 신청시 시행사 참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p> <p>▷ 준비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 확인을 위함)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 4층 마케팅부</p> <p>* 받을 주소가 계약서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반드시 메모하여 요청해주시면 받을 주소로 송부하여 드립니다.</p>	
<p>※ 접수 후 15일 이상 소요</p>	

2) 법무사 대리 등기 신청 시(소유권이전등기 위임하여 법무사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1단계 (법무사 대리 신청시)	계약자 / 법무사 신청(접수)
<p>[준비서류]</p> <p>① 위임장 1부(작성 후 첨부) ②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③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자 명단</p> <p>▷ 준비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 확인을 위함)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 4층 마케팅부</p> <p>※ 위임장 작성 시 동호수, 계약자 성명, 주소, 건축면적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면적 - 첨부된 단지별 면적표 참고)</p> <p>※ 접수 후 15일 이상 소요</p>	

※ 법무사 위임 신청 시 : 법무사를 선정하신 후, 해당 법무사 사무실로 등기서류를 접수하시면 등기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집행합니다.
 (은행 담보대출 세대는 해당 은행 지정법무사에 별도 접수)

2단계	1단계 서류 접수 후 시행사에서 관련 서류 계약자/법무사 송부
<p>[시행사 발급서류]</p> <p>①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②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③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p> <p>※ 접수 후 15일 이상 소요</p>	

3 단계	등기소에 등기 신청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p>① 시행사 발급서류 지참하여 등기소에 신청 ② 전매(증여)세대 추가 준비서류 - 증여(부부 공동명의 및 배우자로 명의변경 세대 : 증여계약서(검인) 원본 1부</p> <p>※ 등기소 방문 전 등기소에 사전 문의하여 준비하실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3.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으신 주택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시에 의해 널리 알리는 공시방법으로 법원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분양자는 위 등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당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과표의 1%)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아파트 및 유상옵션계약) 및 중도금대출 상환 완료 세대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시행사[인본개발(주)]의 (법인으로 날인된)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정보를 발급받아 교부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한(60일)내에 여유롭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 사항 :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한신공영 마케팅부 ☎02-3393-3320

< 매도용인감증명서 신청시 시행사 참고사항 >

인본개발(주)

법인명	인본개발(주)	
법인등록번호	110111-4269563	
관할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대표자	손상익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1층 일부	